

의안번호	2202449
의 퇴 인	임미애 의원
회 답 일	2024.8.8.
추 계 번호	24E253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개사육농장주가 지급받은 폐업지원금 등에 대한 비과세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의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104조의34(개사육농장주가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에 대한 비과세)	○ 개사육농장주가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신설 － 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장주가 같은 법에 따라 폐업 등을 위하여 지원받은 지원금, 시설물잔존가액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과세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제104조의34(개사육농장주가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에 대한 비과세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개사육농장주가 같은 법 제11조¹⁾에 따라 폐업 등을 위하여 지원받은 지원금, 시설물잔존가액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- 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」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

1) 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(폐업 등의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·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며, 2024년 2월 6일에 제정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8월 7일부터 시행됨
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개사육농장주의 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정부의 폐업지원금 등의 세부내용 및 규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현 시점에는 같은 법에 따른 「개식용 종식 기본계획」도 발표되지 않은 등²⁾ 관련 정보가 없어 객관적인 추계가 불가능함
 - 참고로, 2024년 8월 7일 시행된 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은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개사육농장주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정한 금액, 시설물 잔존가액 및 시설물 철거를 지원하도록 규정³⁾하여 폐업지원금의 구체적인 액수 등은 정부가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2)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법에 따른 「개식용 종식 기본계획」을 2024년 9월에 발표할 예정임

3) 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

제8조(폐업지원의 내용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농장주에게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정한 금액, 개사육 농장 시설물 잔존 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해야 한다.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신홍철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홍철	02-6788-4745	hongfe@assembly.go.kr